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 수립〉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499호)

2025.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	---

III. 검토의견	2
-----------------	---

1.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 수립	2
------------------------	---

I. 제안경위

2025년 8월 29일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무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두고 있으나 2024년 사고사망 만인율이 여전히 1만명 당 0.39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주요 국가들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국가적 차원의 산업재해예방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는 중대재해 감축방안 및 주요 사망 요인에 대한 분석과 집중관리 방안, 건설공사·소규모사업장·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무제공자에 대한 통합적 안전보건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종합적인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 수립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재해예방정책의 기본 방향과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감축 방안 등을 포함한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국무회의 심의로 확정된 해당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해당 기본계획에 따른 조치 필요사항을 정부의 책무에 명시하고, 정부의 정책과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산업재해 예방 지원</u> 및 지도	2. <u>제4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에 따른 조치 필요사항</u> -----
3. ~ 9. (생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예방정책의 기본 방향
2.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감축 방안
3. 산업재해 주요 사망 요인에 대한 분석과 집중관리
4.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및 사업장 지도 방향
5. 사업장 각 주체별 안전보건관리 역할 강화
6. 건설공사·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업종 및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방안
7. 하청 등 간접고용 및 비정규직 노동자, 노무제공자에 대한 통합적 안전보건관리
8. 화학물질 관리기준에 대한 점검 및 개선대책
9. 새로운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대책
10.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

③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

	<u>쳐 확정한다.</u> <u>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u> 지방자치단체는 <u>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책무)</u> ----- ----- <u>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과 제4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의 이행</u> ----- ----- ----- -.
<u>제4조의3 (생 략)</u>	<u>제4조의4 (현행 제4조의3과 같음)</u>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나 구체적인 내용, 수립 주기 등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¹⁾

- 1)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개정안은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재해예방정책의 기본 방향과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감축 방안,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 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국무회의심의·확정,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통보 등의 절차 등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조치사항을 정부의 책무에 명시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정부가 수립하는 계획이 실효성 있게 수립되고, 그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데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현행법의 규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과의 관계가 문제되는바, 두 계획의 목적이나 내용이 유사하여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한다면 제7조를 개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가적 차원의 산업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제1항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공표할 의무를 이미 규정하고 있어 제7조의 개정이 필요하고, 현재 「노동안전 종합대책(9.15)」에 따라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²⁾ 통해 기본계획을 심의받는 방향으로 개편 추진 중임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산재예방대책의 일관성·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사정 및 전문가 포함 15인 내외로 구성하여 설치·운영 추진 예정

문 의 처
02)6788-5545